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9월 9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9회국회(정기회)

-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9. 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이수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 철 호)

□ 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검사의 조사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 3. (생략) 4. <u>수사기관의 조사</u> 와 법원의 증인 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u>조사</u> ---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¹⁾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으로 규정하였으며,²⁾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³⁾에서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불송치사건의 재수사 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고소인등과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음.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일반 지원시설⁴⁾의 업무규정에 「형사소송법」에

-
-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은 i)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ii)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한 영장의 청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집행만 가능하게 하며, iii)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상호 협력으로 대체하며, vi)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v) 검사의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의신청·재정신청권자 확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 2) 「공소청법 제정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8. 4. 공포, 10.2. 시행)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과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4)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임.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입법 조치에 해당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성평등가족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검사 및 공소청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② ~ ⑤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수사기관의 조사</u> 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4.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 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 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